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브이아이 글로벌 멀티에셋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변경시행일 : 2023년 1월 20일

3. 변경사유

- ①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 ②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8.54% → 9.53%
- ③ 투자대상자산 추가 : 환매조건부매수
- 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의무, 용어정리 등)

4. 변경사항

가.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__ 운용한다. 1. 내지 3. (생략) <신 설> 4.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__ 운용한다.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현행과 같음)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__ 따른다. 1. 내지 2. (생략) 3.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__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__ 따른다. 1. 내지 2. (생략) 3.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__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그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__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__ 운용할 수 없다. 가.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__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__ 운용할 수 없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환매조건부매수
제23조 (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① 내지 ③ (생략) ④ 신탁업자는 ___ 확인하여야 한다. 1. 내지 5. (생략)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등 <신 설> ⑤ (생략)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신탁업자는 ___ 확인하여야 한다. 1. 내지 5. (현행과 같음)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___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___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내지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내지 3. (생략) ② 내지 ③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내지 3. (현행과 같음)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 (보수)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내지 3. (생략) ③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내지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___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___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괄호 추가) 3. 내지 5. (생략) ③ 내지 ⑨ (생략)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 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 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내지 5. (현행과 같음) ③ 내지 ⑨ (현행과 같음)
부칙	<신 설>	이 신탁계약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 행한다.

나.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 가>	2023-01-20 신탁계약 변경 - 투자대상자산 추가 : 환매조건 부매수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의무, 용어정리 등)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추 가>	④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 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두 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 기관에의 예치 의 비율이 일시적 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음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 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두 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그 비율이 일시적 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내지 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

	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삭 제>
	__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__	__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는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__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 자산신탁의 투자전략] (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현황	-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8.54%	※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9.53%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연결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	(업데이트)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나. 주요업무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추 가>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2) 의무 및 책임 (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KIS채권평가	KIS자산평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끝.